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가단1227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강동경, 신준우, 변형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미란

변 론 종 결 2020. 6. 15.

판 결 선 고 2021. 8. 1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17. 5. 5. 체결된 5,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과 2017. 5. 31. 체결된 7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17. 5. 6. 체결된 5,000,000원에 관한 채권양도계약과 2017. 6. 14. 체결된 70,000,000원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각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8427호로 피고의 시아버지 C에 대하여 대여금 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대여금 청구 사건이 조정에서 회부되었으며, 2013. 12. 19. 원고와 C 사이에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4.부터 같은 해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등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머5686 대여금)

나. 피고는 2017. 5. 6. D과 남양주시 E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중 7,5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6. 14. 나머지 67,5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의 금융계좌로 2017. 5. 5. G(C의 처제이자 피고의 시이모)의 금융계좌로부터 5,000,000원이 송금되고, 2017. 5. 31. H의 금융계좌(G의 친구이자 H의 언니인 I가 사용하던 금융계좌)로부터 70,0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에는 C과 배우자 L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 H, I, J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2019. 11. 13.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C은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와 G, H 등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였다. C은 위 기초사실 다항과 같이 G와 H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 중 75,000,000원을 피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임대인 D에 대하여 7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는 C과 피고 사이에 위 75,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써 C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C의 며느리로서 C의 무자력 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이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75,000,000원은 피고가 아닌 C의 소유인데, C은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결국 C이 피고에게 7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결과가 되므로 C과 피고 사이에 위 75,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써 C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C의 며느리로서 C의 무자력 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이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사해행위로 양도받은 75,000,000원의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전 항변

원고는 당초 피고와 C 사이에 2017. 10.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21. 5.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위적으로 2017. 5. 5. 및 2017. 5.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2017. 5. 6. 및 2017. 6. 1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구한다는 것이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변경한 것이다. 피고는 2019. 10. 1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2017. 10. 24. C로부터 7,0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2017. 5. 5 5,000,000원, 2017. 5. 31. 7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용하였으며, 2017. 5. 6. 계약금 7,500,000원, 2017. 6. 14. 잔금 67,5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는 2019. 10. 2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2019. 10. 21.경에는 자신이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원인을 알았다 할 것이고,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2021. 5. 10.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적기간인 1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C로부터 2017. 10. 24. 7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2017. 5. 5. 5,000,000원, 2017. 5. 31. 7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며, 2017. 5. 6.자 5,000,000원 및 2017. 6. 14.자 70,000,000원에 대한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C이 G와 H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였고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75,000,000원의 실제 소유자가 C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

원고와 C, L는 2014. 5. 29.자 약정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로 문경시 M 임야 1677㎡와 N 임야 260㎡에 관한 L 소유 토지 지분 전부를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현금 40,000,000원으로 변제한다. C, L는 위 각 토지의 O 지분을 80,000,000원에 매수한다. C, L는 L 소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에 대하여 2016. 5. 31.까지 모두 해지 및 말소, 취하를 책임지고 한다. 원고는 C, L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전부 포기하고 서로 쌍방에 대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임야의 지분을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도록 청구하거나 40,000,000원을 청구할 채권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원고가 C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C이 2017. 10. 24. 피고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소장 제2면), 위 주장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2021. 5.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대상을 실제로 변경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대상의 시기를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변경을 새로운 소의 제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변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본안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하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J, P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Q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2020. 6. 18.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C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웠고, 피고의 배우자이자 C의 차남인

J은 C로 하여금 J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사실, ②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R 주식회사의 금융계좌에 2019. 6. 18. H이 20,300,000원을, G이 3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5.경 C의 장남 P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중 58,200,000원을 원고가 대여하고 P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며 C이 P으로부터 그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통고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위 각 서류를 작성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C이 J 명의의 금융계좌 이외에도 피고 또는 G, H 명의의 금융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증인 G, C, J, P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2019. 11. 13.자), 이 법원의 주식회사 S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2020. 3. 27.자), 이 법원의 T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2020. 4. 20.자 및 2020. 6. 25.자), 이 법원의 U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2020. 6. 17.자), 이 법원의 V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2020. 7. 3.자), 이 법원의 주식회사 Q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2020. 12. 14.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㉗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피고, G, H 명의의 금융계좌의 각 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을 살펴봐도 C이 위 각 금융계좌를 이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금융계좌를 그 명의인들이 실제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④ 임대차보증금을 대여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동액의 금전으로 반환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를 대여한 사람이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다른 명목의 대여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사정과 G과 피고는 C, L 부부와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 L 부부를 위하여 피고가 G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차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①항, ②항, ③항 기재 각 사실 및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넘어 C이 피고, G, H 명의의 금융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